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원주영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6. 2.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7일 원주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남양주시민 및 단체로부터 소장 도서를 기증받아 공공도서관의 장서 확충에 활용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불용 도서 등 여분의 도서를 필요한 시민·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안 제3조)
- 다.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라.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관한 규정(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정약용도서관과
- 라. 입법예고 : 2026. 1. 27.(화) ~ 2026. 2. 1.(월)(5일간) / 의견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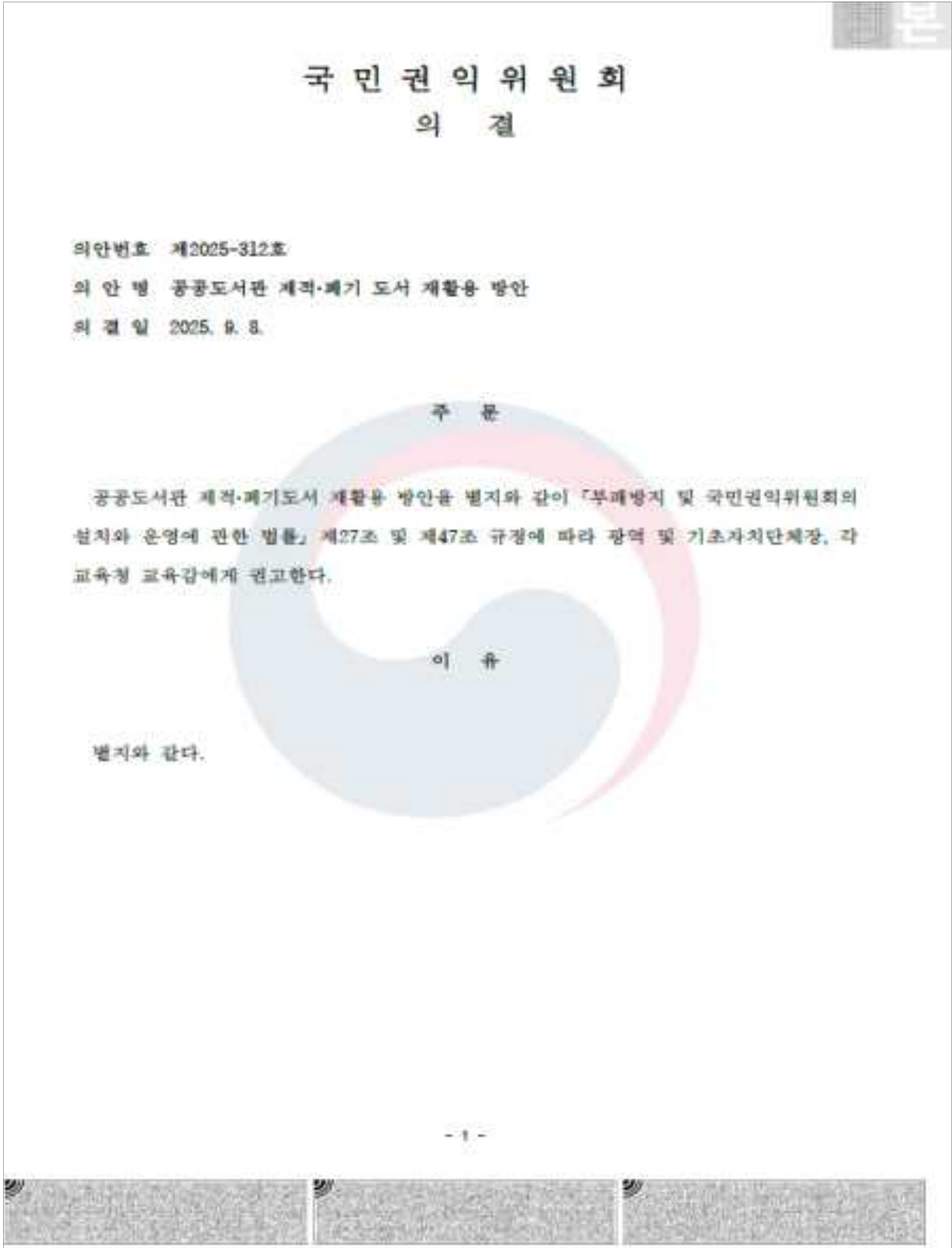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및 제적·폐기 도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9월,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가 보관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도서 기증 및 제적·폐기 도서의 활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기증 대상, 절차 및 운영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식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대상기관 및 조치사항	조치기한
① 도서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가 없을 경우,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및 무상배부 조항을 포함해서 새로운 조례 제정 ※ 조례를 이미 제정한 지자체는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및 무상 배부 조항만 신설 	26. 3.31.
② 도서 재활용 및 무상배부에 따른 세부절차, 인력 활용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및 무상배부와 관련한 세부 절차, 대상자, 폐기도서 처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자원봉사자 등) 활용 계획 수립 ※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도 무방 	26. 3.31.



붙임1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 [별표 7]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7조(포상) 시장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3. 미첨부 사유

- 도서 기증 활성화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도서관사업소 정약용도서관과장 조성호